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 안 번 호	25-101 관련

제안년월일 : 2025. 8. 29.
제 안 자 : 복지도시위원장

1. 수정이유

제2조의2 단서를 존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가능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제2조의2 단서 “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”를 “삭제”하는 것을 “존치”하는 것으로 수정함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의2 단서 “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”를 “삭제”하는 것을 “존치”하는 것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(개정안과 같음)
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	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----- - 2030년 12월 31일----------. 〈단서 삭제〉	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----- - 2030년 12월 31일----------. 〈단서 존치〉
제12조(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) ①·② (생 략) ③ 「지방재정법」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에게, 지출원	제12조(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「지방회계법」 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	제12조(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) ①·② (개정안과 같음) ③ (개정안과 같음)

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.	---------- ----------.	